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0호

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76-1번지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월 25일

서울특별시

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가. 정비구역 현황

구역명	위 치	구역면적(㎡)	추진단계	비고
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	영등포구 문래동 76-12번지 일대	17,794.6	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(승인일 : 2022.01.19.)	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518호 (2020.12.03.)

나. 해제기한 연장 : 2026.1.18.까지(2년)
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3.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(☎02-2133-7141) 및 영등포구 주거사업과(☎02-2670-357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